



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

[시행 1968. 8. 10.] [서울특별시규칙 제741호, 1968. 8. 10., 제정]

서울특별시 (고객지원과) 02-3146-1181

제2조(급수구분)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전용급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1개소전용의 급수장치(이하 급수전이라 한다)에 의하여 가사용에 공하는 급수.
2. 영업용 목욕탕영업용 및 공업용급수
3. 관공서 및 공공기관용급수
- ②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용급수는 1개급수전에 의하여 30세대이상의 주민이 공용하는 급수
- ③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소화용급수는 소화전에 의한 소화용 및 소화연습용으로 사용하는 급수

제3조(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) ① 조례 제5조에 규정한 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전용급수전을 소유할 수 없는 영세민이 30세대 이상 집단거주하는 지역
2. 주민이 60세대를 초과하여 기설공용급수전을 이용함에 시장이 있는 지역.
- ② 전항에 의한 공용급수전의 설치는 기설급수전과 120미 이상의 상호거리를 두어야 한다.
- ③ 공용급수전을 수익자부담으로 설치코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1. 공용급수전설치신청서
 2. 설치위치약도 및 지적도
 3. 급수대상세대명 및 급수인구
 4. 소요공사비자담확약서
 5. 공용급수전기부승낙서

제13조(공용급수전의 관리) ① 조례 제24조에 의한 공용급수전의 관리인은 당해급수전 위치에서 거리 50미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수도사업소장이 이를 선정한다.

- ② 전항의 관리인은 소장이 지정하는 재정보증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전항의 관리인은 공용급수전관리 및 급수사용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교체할 수 있다.
- ④ 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전의 급수판매가격은 한지계(약72립방미)당 2원으로 한다.